

## ●환경부고시 제2024-92호

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강수계 수변구역(환경부 고시 제2002-141호, 제2008-202호, 제2009-35호 및 제2010-163호) 중 영동군 및 옥천군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·고시합니다.

2024년 04월 30일

환경부장관

###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

#### 1.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

구 분	변경내역(지정면적, km <sup>2</sup> )			비 고
	변경전	변경후	증감	
금강수계	372.787	372.644	0.143 감소	<군사시설보호구역> -영동군 72,365m <sup>2</sup> 감소 <하수처리구역 편입> -옥천군 71,026m <sup>2</sup> 감소
충청북도 영동군	28.860	28.788	0.072 감소	
충청북도 옥천군	128.314	128.243	0.071 감소	

#### 2. 변경지정 도면 : 관보게재 생략

#### 3. 관계도서 열람장소

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홈페이지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) 및 충청북도 영동군·옥천군에서 열람이 가능함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변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적용례) 해당 지역의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)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복되어 해제되는 수변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편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